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1일

발 의 자: 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영옥,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박영한, 박칠성,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이민석, 이성배,  
이영실,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황철규  
의원(21명)

## 1. 제안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  
는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라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면 집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리단집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  
사하기 어려움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구분소  
유자들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예산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홍보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제1호의2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홍보

제1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교육·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2. ~ 8. (생략)</p> <p>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lt;신설&gt;</u></p> <p>3. ~ 7. (생략)</p>	<p>제7조(교육·홍보)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홍보</u></p> <p>2. ~ 8.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u></p> <p>3. ~ 7. (현행과 같음)</p>